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4883호 2004. 12. 6. (월)

선	기 관 의 장
람	

경 상 북 도

■ 고 시

- 도지정문화재지정및해제고시(제2004-350호) 2
- 사방지의지정고시(제2004-351호) 7
- 천북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변경고시(제2004-352호) 9
- 도로구역변경결정및접도구역지정고시(제2004-353호) 19

■ 공 고

- 도지정문화재지정및지정해제예고(제2004-517호) 20
- 도지정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예고(제2004-518호) 24
- 건축허가제한공고(제2004-519호) 25

시 군

■ 고 시

- 포항도시계획시설지형도면승인고시(포항시고시제2004-936호) 26
- 경주도시계획(건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제2004-72호) 28
- 경산(남산)도시계획도로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경산시고시제2004-36호) 29
- 칠곡군관리계획(학교)결정(변경)고시(칠곡군고시제2004-38호) 31

회								
람								

■ 공 고

- 공인신조공고(경주시공고제2004-1024호) 35
-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공고(안동시공고제2004-438호) 36
- 영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실시계획(안)공람공고(영주시공고제2004-489호) 38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실시계획인가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565호) 40

■ 공 고

- 도로사용개시에관한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311호) 41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04-350호

고 시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15조,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문화유산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및 해제하고, 동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보에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지정문화재 지정내용

일련 번호	종 별	지정 번호	文化財名	數量	所有者	所 在 地
1	민 속 자 료	133	구미 금강사 금란가사 龜尾 金剛寺 錦欄袈裟	1點	金剛寺	구미시 원평동 1008-25
2	기념물	149	포항 화진리 해당화 군락	m ² 5,015	김태선 외 5인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90
3	기념물	150	안동 위리의 나무화석	m ² 15,935	국 유	안동시 임동면 우리 산74-4
4	기념물	151	울진 주인리의 황금소나무	1주 436m ²	남혜련	울진군 북면 주인리 산136
5	문화재 자 료	473	안동 송은정 安東 松隱亭	1棟	宋鍾玉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산31

가. 도지정문화재 지정사유

○ 구미 금강사 금란가사(龜尾 金剛寺 錦欄袈裟)

金欄袈裟의 제작기법이나 재료의 조직, 색깔로 보아서는 민간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고 王室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899년 高宗의 勅旨에 의해 시행된 海印寺 印經佛事時 法主인 鏡虛禪師(1849년~1912년)가 착용한 것을현재 金剛寺에서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제작시기가 대체로 분명하고, 제작기법이 뛰어나 학술적으로 귀중한 자료이므로 民俗資料로 指定한다.

○ 포항 화진리 해당화 군락

해당화는 낙엽활엽으로 키가 1~2m정도 자라는 관목으로 한국, 중국, 일본 및 극동지역의 해안 砂地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과 서해안의 해안 砂地에 분포하고 있으나, 약용, 식용, 염색원료 및 정원수 등으로 이용한 탓으로 대부분의 군락지는 훼손되었다.

본 해당화 군락은 경북지역에서 유일한 유적군락으로서 학술적 가치 뿐만 아니라 사구보호와 경관적 측면에서도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므로 기념물로 지정한다.

○ 안동 위리의 나무화석

위리의 화석지는 규모상으로 국내에서는 최대로서, 적절한 보존조치 및 보호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의 귀중한 자연유산을 영원히 멸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자연유산의 보존측면에서 기념물로 지정한다. 지정후 화석지 보존을 위하여 기초학술조사와 종합적인 발굴조사 수행 등 적절한 보존 조치가 필요하다.

○ 울진 주인리의 황금소나무

이 소나무는 나뭇잎색이 황금색이며 수관이 총관형인 특징을 가진 소나무 중에서 희귀변종이다. 따라서 소나무 변이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되므로 기념물로 지정한다.

○ 안동 송은정(안동 송은정)

이 정자는 건립시기가 1932년으로 건축연대는 일천하나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한국 정자의 전통적 특성을 잘 계승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자료로 지정한다.

나. 기념물 지정구역 예고내역

(단위 : m²)

문화재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내용		
					지정구역 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포항 화진리 해당화 군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계	3필지	5,015	5,015		
		103	묘지	2,680	2,680	포항시 죽도동 663-14	심재헌
		90	묘지	1,909	1,909	포항 장성동서지구 54블럭11롯트	박기호
		89	임야	426	426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주공 [㉠] 210/103	구양희
안동 위리의 나무화석	안동시 임동면 위리	계	4필지	44,076	15,935		
		산74-4	임야	28,937	4,839	서울 은평구 중산동 244 우방 [㉠] 102/1805	김연두
		산74-5	임야	6,960	5,851		경상북도
		산74-9	임야	5,527	2,87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93-37	김성천외1인
		산74-10	임야	2,652	2,375	서울 은평구 중산동 244 우방 [㉠] 102/1805	김연두
울진 주인리의 황금소나무	울진군 북면 주인리	산136	임야	93,678	436	경주시 서약동 498	남해련

2. 도지정문화재 해제내용

일련 번호	지정별	문화재명	수량 (단위:m ²)	소유자	소재지
1	기념물 71	입암서원의 향나무	1주 542m ²	입암서원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178
2	기념물 101	청도 명대리 사철나무	1주 544m ²	김해김씨 철효문중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31

가. 도지정문화재 지정해제사유

○ 입암서원의 향나무(기념물 제71호)

입암서원의 뜰에서 자라고 있던 수령 약 400년의 향나무로 기념물 제7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여 왔으나 2002년 태풍 ‘루사’ 와 2003년 태풍 ‘매미’ 의 강풍에 의해 뿌리채 뽑혀진 것을 일으켜 세워 보호해 왔으나 고사하고 말았다. 따라서 기념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상실하였으므로 기념물 지정을 해제한다.

○ 청도 명대리 사철나무(기념물 제101호)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31번지에서 자라고 있는 사철나무는 사철나무 중에서는 수령이 가장 많고 가장 큰 나무였으므로 기념물 제10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부터 급격히 수세가 약화되어 2001년 9월 청도군에서 영양공급 및 토양개량 외과수술을 실시하였다. 외과시술후 수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고사하고 말았다. 이에 기념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상실하였으므로 기념물 지정을 해제한다.

경상북도 고시 제2004-351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지정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 위치

가. 붙임 사방지 지정명세서

2. 금지사항

가. 죽목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나. 토지의 형질변경

다.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

사방지 지정 조서

소재지				지목	전면적 (㎡)	지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주소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총계	8	12	29		4,891,751	42,000			
상주	외남	신상	1056-2	묘지	2,228	300	상주 청리 윤리 572	이상열	산사태복구
"	외남	신촌	산81-2	임야	5,554	500	상주 외남 구서	박성수외2	"
"	"	"	590	임	5,316	1,400	상주 공성 금계 84	강기술	"
"	외남	소상	산18-4	임야	174,109	500	상주 외남 소상 41	김성철외4	"

소재지				지목	전면적 (㎡)	지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주소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상주	외남	소상	363	묘지	11,140	200	상주 외남 소상 222	김달원외2	산사태복구
"	공성	우하	산51-4	임야	48,653	400	인천 북구 부평 204-4	이 석 재	"
"	"	"	산53	임야	332,081	400	상주 모동 수봉 547	황인목외4	"
"	모동	상관	산107-5	임야	22,930	1,700	상주 외남 혼평 257-2	황득주외1	"
"	"	"	산106	임야	36,638	4,500	서울 동작 사당 277-3	홍 성 덕	"
"	"	"	산99	임야	8,331	1,600	상주 모동 상관	안 시 각	"
"	"	"	산103	임야	132,595	2,000	경주 양관 양월오리 1352	금 광 섭	"
"	"	"	산94	임야	85,488	1,000	상주 모동 용호 52	김 용 팔	"
"	"	"	산72	임야	43,240	4,500	대구 수성 범어 217-19	이 하 일	"
"	"	"	산71	임야	198,347	1,300	서울 성북 미아 840	김 정 기	"
"	"	"	산25-1	임야	103,116	200	상주 모동 상관 824	김정기외2	"
"	"	"	산64	임야	56,331	500	상주 모동 이동 683	황 의 흥	"
"	"	"	산41	임야	232,122	100	서울 성북 미아 840	김정기외3	"
"	"	"	산46-1	임야	193,884	4,000	서울 성북 미아 840	김정기외3	"
"	"	"	산48-1	임야	492,292	2,000	상주 무양 167-1	홍양이씨월 간파문중	"
"	모동	수봉	산82-1	임야	468,495	900	서울 강남 역삼 691-14	원 중 균	"

소재지				지목	전면적 (㎡)	지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주소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상주	모동	수봉	산72-1	임야	310,711	3,800	서울 성북 안암3가 삼익 [㉠] 1/1306	김 광 희	산사태복구
"	모동	정량	산26-1	임야	60,992	1,900	대구 동구 신천 350-3	남동원외1	"
"	은척	남곡	산44-2	임야	67,537	200	상주 은척 남곡 236	성 백 민	"
"	낙동	상촌	산80	임야	132,099	1,600	경기 여주 북내 오막리 359	동광홍발 ^주	"
"	"	"	166	구거	2,465	2,900		건설교통부	"
"		지천	127	구거	46,545	400		건설교통부	"
"	낙동	운평	산99	임야	13,388	800	서울 서초 서초1336 우성 [㉠] 6/802	최 태 현	"
"	화서	화송	산37-1	임야	1,312,264	2,100	서울 종로 관철 43-4	대성자원 ^주	"
"	"	"	산38-1	임야	292,860	300	서울 종로 관철 43-4	대성자원 ^주	"

경상북도 고시 제2004-352호

고 시

천북일반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천북일반지방산업단지

나. 위 치 : 경북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화산리 일원

다. 면 적 : 925,620㎡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가. 포항 소재 철강산업 및 울산 소재 자동차 관련업체인 각종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위주로 반도체, 정보통신과 같은 첨단산업분야의 업종을 집산화, 계열화함으로써 경주지역 산업발전을 도모

나.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

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자립기반 강화 및 산업기반 조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경일종합이엔씨(주) 대표이사 김 재 석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04. 6 ~ 2007. 6

나. 시행방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유치업종(변경없음)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등

나.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m ²)	구성비(%)	면 적(m ²)	구성비(%)	
계	615,350	100.0	630,350	100.0	
조립금속제품제조업	94,400	15.3	93,950	14.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72,000	28.0	196,790	31.2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48,950	56.7	339,610	53.9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 게재생략

6.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별(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925,620	925,620	-	
관 리 지 역	353,208	-	감 353,208	
농 립 지 역	572,412	-	감 572,412	
일 반 공 업 지 역	-	925,620	증 925,620	

○ 세부토지이용계획(산업단지 개발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m ²)	구성비(%)	면 적(m ²)	구성비(%)	
합 계	925,620	100.0	925,62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615,350	66.5	630,350	68.1	
자동차 및 트레일러	348,950	37.7	339,610	36.7	
조립 금속제품	94,400	10.2	93,950	10.1	
기타기계 및 장비	172,000	18.6	196,790	21.3	
지 원 시 설 용 지	42,640	4.6	25,240	2.7	
지 원 시 설	26,220	2.8	18,600	2.0	
근린생활시설	14,950	1.6	5,000	0.5	
연구시설	1,470	0.2	1,640	0.2	
공 공 시 설 용 지	267,630	28.9	270,030	29.2	
녹 지	143,490	15.5	142,098	15.5	
공 원	11,560	1.2	11,560	1.2	
수 도	3,000	0.3	3,000	0.3	배수지
도 로	74,520	8.1	73,312	7.9	가각면적 포함
주 차 장	8,310	0.9	8,310	0.9	
저 류 지	-	-	5,000	0.5	
오·폐수처리시설	9,000	1.0	9,000	1.0	
폐기물처리시설	17,750	1.9	17,750	1.9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도 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면적 (㎡)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계	기정	13개소 (15개소)					6,142 (7,842)				74,520 (93,295)	가각포함
	변경	13개소 (15개소)					5,952 (8,024)				73,312 (99,527)	가각포함 감 1,208
소계	기정	4개소					1,982				33,600	
	변경	5개소					2,142				34,880	증 1,280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	1,042	화산리 1178-1	오야리 산12-3	일반도로	21,850		
변경	중로	1	1	19~25	보조간선	1,042	화산리 1178-1	오야리 산12-3	일반도로	20,440	감 1,410	
신설	중로	2	1	15	집산도로	160	오야리 산6-5	오야리 산6-5	일반도로	2,480	증 2,480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420	오야리 산67	오야리 산4	일반도로	5,108		
기정	중로	3	2	12	비산도로	315	오야리 산5-1	오야리 산12-1	일반도로	3,982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205	오야리 산5-1	오야리 산5	일반도로	2,660		
변경	중로	3	3	12~18	집산도로	205	오야리 산5-1	오야리 산5	일반도로	2,870	증 210	
소계	기정	6개소					3,550				35,890	
	변경	6개소					3,400				35,002	감 888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00	오야리 산12-1	오야리 산4	일반도로	10,068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285	화산리 1180-1	오야리 산6-5	일반도로	13,018		
변경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40	화산리 1180-1	오야리 산6-5	일반도로	12,180	감 838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면적 (㎡)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450	오야리 산5-1	오야리 산6-5	일반도로	4,568		
변경	소로	1	3	10	국지도로	445	오야리 산5-1	오야리 산6-5	일반도로	4,518	감 50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390	화산리 산159-14	오야리 산5-1	일반도로	3,968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385	화산리 159-1	화산리 산159-1	일반도로	3,851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40	화산리 159-14	오야리 산5	일반도로	417		
소계	기정	3개소					610				5,030	
	변경	2개소					410				3,430	감 1,600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20	화산리 159-14	화산리 1180-3	일반도로	890		
폐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	-	-	-	-	감 890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240	화산리 159-14	화산리 1180-3	일반도로	2,000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160	화산리 159-14	화산리 1180-3	일반도로	1,290	감 710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50	오야리 산5-1	오야리 산5-1	일반도로	2,140		
소계	기정	1개소					1,000				15,000	
	변경	1개소					1,372				22,440	증 7,440
기정	진입도로		15		보조간선	1,000	시도14호선 (화산구간)	중로1-1	일반도로	15,000		
변경	진입도로		15~19		보조간선	1,372	시도14호선 (화산구간)	중로1-1	일반도로	22,440		
소계	1개소					700				3,775		
기정	입체교차로 가감속구간		5~10			700	국도20호선 (오야구간)	중로1-1	일반도로	3,775		

※ ()안은 지구외 도로 합계 면적

○ 공 원(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근린공원	오야리 산 2-1번지 일원	11,560	

○ 녹 지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기정			143,490	
	변경			142,098	감 1,392
기정	1	완충녹지	오야리 산12-1번지 일원	1,760	
폐지	1	완충녹지	오야리 산12-1번지 일원	-	감 1,760
신설	1	완충녹지	화산리 산159-14번지 일원	1,440	증 1,440
기정	2	완충녹지	오야리 24번지 일원	390	
변경	2	완충녹지	오야리 24번지 일원	410	증 20
기정	3	완충녹지	오야리 산6-5번지 일원	1,620	
변경	3	완충녹지	오야리 산6-5번지 일원	3,680	증 2,060
신설	4	완충녹지	오야리 산12-1번지 일원	1,130	증 1,130
기정	4	완충녹지	화산리 산172-17번지 일원	100	
변경	5	완충녹지	오야리 산6-5번지 일원	50	감 50
기정	5	완충녹지	화산리 산159-14번지 일원	570	
폐지	5	완충녹지	화산리 산159-14번지 일원	-	감 570
기정	6	완충녹지	오야리 산5-1번지 일원	960	
폐지	6	완충녹지	오야리 산5-1번지 일원	-	감 960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7	완충녹지	오야리 산5-5번지 일원	5,170	
변경	6	완충녹지	오야리 산12-1번지 일원	4,480	감 690
기정	9	완충녹지	오야리 산5-5번지 일원	6,000	
변경	7	완충녹지	오야리 산5-5번지 일원	5,900	감 100
기정	11	완충녹지	오야리 산5번지 일원	79,240	
변경	8	완충녹지	오야리 산5번지 일원	81,238	증 1,998
기정	10	완충녹지	화산리 산159-14번지 일원	45,740	
변경	9	완충녹지	화산리 산159-14번지 일원	41,830	감 3,910
기정	8	완충녹지	오야리 산2번지 일원	1,940	
변경	10	완충녹지	오야리 산2번지 일원	1,940	번호변경

○ 수 도(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수 도	화산리 산159-14번지 일원	3,000	배수지

○ 오·폐수처리시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오·폐수처리시설	화산리 1180-1번지 일원	9,000	
변경		오·폐수처리시설	오야리 산6-5번지 일원	9,000	위치변경

○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폐기물처리시설	오야리 산12-1번지 일원	17,750	

○ 주 차 장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기정			8,310	
	변경			8,310	
신설	1	노외주차장	화산리 산159-1번지 일원	900	증 900
기정	2	노외주차장	오야리 산5-1번지 일원	1,770	
변경	2	노외주차장	오야리 산5-1번지 일원	1,550	감 220
기정	3	노외주차장	화산리 산159-14번지 일원	2,530	
폐지	3	노외주차장	화산리 산159-14번지 일원	-	감 2,530
신설	3	노외주차장	오야리 산12-1번지 일원	1,860	증 1,860
신설	4	노외주차장	오야리 산12-1번지 일원	1,390	증 1,390
기정	1	노외주차장	오야리 산5번지 일원	4,010	
변경	5	노외주차장	오야리 산12-1번지 일원	2,610	감 1,400

○ 유 수 지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저류시설	오야리 5번지 일원	5,000	저류조

다. 용도지역도, 토지이용계획도, 기반시설계획도: 게재생략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

가.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 시행령 제27조 및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9조에 의한 국가 등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

시설	구분	사 업 량	개략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기정		14,700	
	변경		14,075	
도 로 시설	기정	B=5~10m, L=700m(교량1개소 포함)	8,900	입체교차로 (국도20호선)
	기정	B=15m, L=1,000m		진입도로
용 수 시설	기정	용수관로 D=250mm, L=3,000m	1,200	
	변경	용수관로 D=250mm, L=3,500m	1,350	
폐수처리시설	기정	오·폐수처리시설 (1,200m ³ /일)	2,600	
	기정	방류관로(D=400mm, L=5,800m)	2,000	
	변경	방류관로(D=400mm, L=3,500m)	1,225	

나.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도 : 게재생략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단지 변경지정 고시 관계도서는 경주시 도시개발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경상북도 고시 제2004-353호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접도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로구역 변경내용

구 분	노 선 명	구 간	연 장	주 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 사유	비 고
현 재	국가지원 지방도68호 (서천 ~ 경주선)	시점 :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666-9번지 종점 :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450-1번지	3.93km 도시계획도로 (대3-38호) 1,494m 포함	선산읍 봉곡리, 죽장리	옥성 ~ 선산간도로	일반구간 (2.446km) 8.0m → 20.0m (구미시 중로1-62) 도시계획 구 간 (1.494km) 8.0m → 25.0m
변 경	"	시점 :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666-9번지 종점 :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450-1번지	3.94km 도시계획도로 (대3-38호) 1,494m 포함		4차로 확 · 포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4. 12 ~ 2010. 12(6년간)

3.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과 같음

나. 공람장소 : 경상북도 도로과, 구미시 건설과, 선산읍사무소

5. 접도구역(목적)

가. 본 구간은 도로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와 미관보존 및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변경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7호 각목의 지구중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도로는 제외

나. 접도구역 지정고시 효력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04-517호

공 고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문화유산을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 및 지정해제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지정해제예고하오니,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경상북도청 문화재과(문화재연구담당)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지정문화재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내용

일련 번호	종 별	문 화 재 명	생년월일 또는 수량	보유자 또는 소유자	소 재 지	비 고
1	기념물	영천 청제 永川 靑堤	146,003m ²	국 유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437-1외	
2	기념물	의병장 신태식 생가지 義兵將 申泰植 生家址	2,077m ²	신정식 신현배	문경시 가은읍 민지리 182, 186	
3	무 형 문화재	문경 한지장 聞慶 韓紙匠	46. 9. 9	김삼식 金三植	문경시 농암면 내서1리 122	
4	무 형 문화재	자인 계정들소리 慈仁 桂亭들소리	30.11.30	이규한 李圭漢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3-2	

나. 지정예고사유

○ 영천 청제

영천 청제는 청제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늦어도 536년 이전에 축조되었으며, 이후 각종 지지류, 청제문부 등의 자료를 통해 수차례의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현존하는 最古의 堤堰 중의 하나이다. 현재 제방의 길이는 243.5m이며 높이는 12.5m로 된 흙 댐으로, 저수면적은 11만m²이고 저수량은 약 59만톤에 이르며 현재도 이 지방 일대의 중요한 용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농업사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이므로 기념물 심의대상으로 선정한다.

○ 의병장 신태식 생가지

도암 신태식 선생은 항일의병 독립운동의 뛰어난 지도자로서 수많은 공적을 남겼으며, 1968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이 추서 되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신태식의 공적을 기려 그의 생가지를 기념물 심의대상으로 선정하며, 지정명칭은 “義兵將 申泰植 生家址” 로 한다.

○ 문경 한지장

문경 한지는 양질의 닥을 엄선하여 전통적 방법으로 한지를 제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량생산하지 않고 소량으로 주문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전통한지가 급격히 소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의 청송한지 이외에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전통한지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문경 한지를 무형문화재로 지정심의대상으로 선정한다.

보유자 김삼식은 3대를 전승한 韓紙匠으로서 그의 한지제조 기술은 경상남도 지역에 그 뿌리를 둔 전통적 방법으로 한지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대상으로 선정한다.

○ 자인계정들소리

이 농요는 경산시 자인면 일대에서 불려오던 11가지의 농요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경상도 농요의 일반적 특징인 메나리조와 덧배기 장단이 그대로 살아 있다. 또한 자인은 경상도 지역에서도 내륙에 위치하여, 이 들소리는 타 지역의 영향이 적어, 이 지방만의 선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경상도 지역의 주민 기질과 말씨의 억양을 닮아 곳곳하며 투박한 역동감이 넘친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예능보유자로 신청한 이규한(74세)은 성음이 좋고, 기능 또한 우수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린 농요를 부를 수 있는 선창자로서 손색이 없는 소리꾼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농요는 자인면 주민들이 스스로 보존회를 결성하여 전승의 의지를 보이고, 소리꾼들이 가창력이 뛰어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대상으로 선정한다.

다. 기념물 지정구역 예고내역

(단위 : m²)

문화재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내용	
					지정구역 면적	소유자
		계	2필지	146,003	146,003	
영천 청제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437-1	유지	110,026	110,026	국유(농수산부)
		437-4	유지	35,977	35,977	국유(농수산부)
		계	2필지	2,077	2,077	
의병장 신태식 생가지	문경시 가은읍 민지리	182	전	1,302	1,302	문경시 가은읍 민지리 180-1 신태식
		186	대지	775	775	농암면 갈동리 산18-1 신헌배

2. 도지정문화재 지정해제

가. 지정해제예고내용

지정별	문화재명	전승지	지정일자	비고
무형문화재 제17호	모필장 毛筆匠	김천시 평화동	90. 8. 7	

나. 지정해제예고사유

보유자인 이팔개(2004. 8. 16 사망)가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종목 자체의 전승이 불가능하므로 도무형문화재 제17호 모필장(毛筆匠)을 지정해제대상으로 선정한다.

3. 지정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

4. 연 락 처

가. 전 화 : ☎053-950-3459, 3575, 3450

나. FAX : ☎053-950-3349

다. 주 소 :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번지

경상북도청 문화재과 문화재연구담당

경상북도 공고 제2004-518호

공 고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무형문화재 제22-가호 “봉화유기장” 의 보유자를 다음과 같이 인정예고 하오니,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경상북도청 문화재과(문화재연구담당)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보유자 인정예고

종 별	문화재명	생년월일	보유자	소 재 지	비 고
도무형문화재 제22-가호	봉화유기장 奉化鑪器匠	54. 8. 27	고태주 高泰柱	봉화군 봉화읍 삼계2리 286	

2. 보유자 인정예고사유

고태주는 아버지 고해룡 아래에서 22~23년 동안 가업으로 유기제작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기 제조의 전 공정을 능숙하게 익혀 이를 무리없이 가르쳐주고 있다. 전 보유자 고해룡이 사망함에 따라서, 보유자후보 고태주를 보유자로 승격시킨다.

3. 인정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

4. 연 락 처

가. 전 화 : ☎053-950-3459, 3575, 3450

나. FAX : ☎053-950-3349

다. 주 소 :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번지

경상북도청 문화재과 문화재연구담당

경상북도 공고 제2004-519호

건축허가제한 공고

2004년 12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한근거 : 건축법 제1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3조

2. 제한목적

포항시 신항만 배후산업단지 및 테크노파크 예정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및 항구적인 발전을 위한 공공개발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 도모

3. 제한내용

대상지역	면 적	대상제외	대상건축물	비 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용한리 우목리, 죽천리 포항시 북구 여남동 일원 (포항 신항만 배후산업단지)	5,433,000m ²	- 건축허가제한지역 도면상 제척지역 - 공공개발(도시개발구역등)이 확정되는 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모든건축물 및 공작물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학전리 일원 (테크노파크 예정지)	2,773,000m ²			

4. 제한기간 : 2004. 12. 8 ~ 2006. 12. 7(2년간)

5. 건축허가제한지역 도면 및 지번별 조서 : 게재생략(포항시 주택과에 비치)

6. 기타사항

건축허가제한지역 도면과 지번별 편입조서가 불부합 될 경우 건축허가제한 도면을 우선으로 적용함

7. 경과조치

공고일 이전에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신청을 한것과 건축을 위한 각종행위(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산림훼손 등)을 접수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 군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04-936호

고 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송전철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남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12월 6일
포 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전기공급설비시설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북영10	전기공 급설비	송전 철탑	대송면 대각리 산156-1	⑩52	증 168	268	
					⑪48			
변경	신북10	"	"	대송면 대각리 산160	100	증 416	516	
변경	신포3	"	"	오천읍 용산리 105	100	증 531	631	
변경	신포4	"	"	오천읍 용산리 153-1	100	증 444	544	
변경	신포5	"	"	오천읍 용산리 360-69	100	증 319	419	
변경	신포6	"	"	오천읍 문덕리 1188-483	100	증 378	478	
변경	신포7	"	"	오천읍 문덕리 802	100	증 326	426	
변경	신포9	"	"	오천읍 문덕리 산109	56	증 378	434	
변경	영일5	"	"	오천읍 문덕리 1188-479	100	증 450	550	
변경	영일6	"	"	오천읍 문덕리 960	115	증 305	420	
변경	영일7	"	"	오천읍 문덕리 749-3	210	증 120	330	

2. 도시관리계획 지형승인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계재 생략)

경주시 고시 제2004-72호

고 시

경주시 고시 제1999-9호('99. 3. 8) 및 경주시 고시 제2000-35호(2000. 6. 10) 경주시 고시 제2001-8호(2001. 2. 10) 경주시 고시 제2001-40호(2001. 8. 9) 경주시 고시 제2002-53호(2002. 8. 19) 경주시 고시 제2003-46호(2003. 8. 1) 경주시 고시 제2004-26호(2004. 6. 1)로 실시인가된 건천도시계획 건천일단의주택조성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 이를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경 주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위치 :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건천도시계획 건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없음)
3. 사업의 면적 : 40,218m²(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166-2번지
 건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조합 조합장 안용화(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 가. 당 초 : 1999. 3. 8 ~ 2004. 12. 30
 - 나. 변 경 : 1999. 3. 8 ~ 2005.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관계인의 주소·성명 : 붙임

8. 도시계획법 제 7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가. 농림부 소관 : 7필지/2,586㎡

나. 건설교통부 소관 : 4필지/998㎡

9. 관계도서는 경주시 도시과와 동 사업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경산시 고시 제2004-36호

고 시

경산(남산)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경 산 시 장

1. 사업의 위치 : 경산시 남산면 평거리 29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로시설

나. 명 칭 : 남산 소로 2-1호선

3. 사업규모

가. 시설결정 : B=8m, L=409m

나. 사업시행 : B=8m, L=409m

4. 사업기간 : 인가일 ~ 2005. 9. 30

5.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701-17번지)

나. 성 명 : 경산시장

6. 인가사유 : 경산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진입로(남산 소로2-1호선) 개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도면게재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남산면 평거리	291-8	답	122	122		경산시			
2	남산면 평거리	676	도	1,210	54	건설교통부	국			
3	남산면 평거리	293-3	답	811	811	남산면 평거리 410	이운락 외4			
4	남산면 평거리	296-1	답	361	361	남산면 평거리 415	이영식			
5	남산면 평거리	295	답	1,098	1,098		경산시			
6	남산면 평거리	293-5	답	6	6	남산면 평거리 410	이운락 외4			
7	남산면 평거리	294-3	답	317	317	남산면 평거리 453	이태식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8	남산면 평거리	680	천	28,694	985	건설교통부	국			
9	남산면 평거리	318-1	천	524	524		경산시			
10	남산면 평거리	317-1	답	631	631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907-1	이수락 외1			
11	남산면 평거리	산52-10	임	1,455	1,455		경산시			
12	남산면 평거리	316-1	답	94	94	남산면 평거리 453	이태식		국	근저당권
13	남산면 평거리	산52-9	임	2,602	425		경산시			
14	남산면 평거리	678	구	433	287	농림부	국			
15	남산면 평거리	산55-1	임	1,041	1,041		경산시			
16	남산면 평거리	산54-1	임	6,217	5,753		경산시			

.....

칠곡군 고시 제2004-38호

칠곡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고시

칠곡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0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 같은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고시로써 갈음합니다. 결정(변경) 고시의 관계도서를 칠곡군청(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12월 6일

칠 곡 군 수

1.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123번지 일원
2. 면 적 : 0.149km²(149,000m²)
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따로붙임
4.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도(1/1,000) : 따로붙임(실음생략)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1. 학교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학 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경북과학대학	대학교	기산면 봉산리 일원	149,000	-	149,000	1992. 2. 11	관리 지역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산면 봉산리)	건축연면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5,282.65	증)1,269	56,551.65	
교육연구시설					34,930.65	증)1,269	34,930.65	
기준	A	강의,교육연구동	강의,교육연구동	123일원	5,666.4	증)1,269	6,935.40	증축
	B	펌프실동	펌프실동	123일원	15.54	-	15.54	
	1	실험,실습복합동	실험,실습복합동	123일원	10,257.83	-	10,257.83	
	2	식당동	식당동	123일원	798.66	-	798.66	
	3	관리실동	관리실동	123일원	705.00	-	705.00	
	4	휴게실동	휴게실동	123일원	84.00	-	84.00	
	5	승덕관	승덕관	123-1일원	2,668.86	-	2,668.86	
	6	경비실동	경비실동	123일원	48.96	-	48.96	
	7	미용실동	미용실동	123일원	28.00	-	28.00	
	8	실습동	실습동	123일원	4,097.82	-	4,097.82	
	9	산학협력관	산학협력관	123일원	2,565.21	-	2,565.21	
	10	복지관	복지관	123일원	124.40	-	124.40	
	11	온실관리소	온실관리소	123일원	52.42	-	52.42	
	12	경비숙소	경비숙소	123일원	53.90	-	53.90	
13	숙직실	숙직실	123일원	50.40	-	50.40		
14	샤워실	샤워실	123일원	63.00	-	63.0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산면 봉산리)	건축연면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존	15	향토관	향토관	123일원	243.3	-	243.3	
	16	기숙사2	기숙사2	123일원	6,006.49	-	6,006.49	
	18	기념전시관1	기념전시관1	123일원	29.70	-	29.70	
	20	다목적강의동- 평생교육관	다목적강의동- 평생교육관	123일원	1,224.84	-	1,224.84	
	21	전통문화회관- 동국서원	전통문화회관- 동국서원	123일원	84.00	-	84.00	
	22	전통실습동-1	전통실습동1	123일원	16.20	-	16.20	
	23	전통실습동- 초당	전통실습동- 초당	123일원	9.72	-	9.72	
	24	노천강당- 봉황대	노천강당- 봉황대	123일원	36.00	-	36.00	
	소 계					34,930.65	증)1,269.0	36,199.65
장래 계획	ㄱ	문화체험관	문화체험관	산159-11일원	3,576.0	-	3,576.0	
	ㄴ	다목적 강의동	다목적 강의동	산159-11일원	5,352.0	-	5,352.0	
	ㄷ	실험실습동	실험실습동	산159-11일원	6,762.0	-	6,762.0	
	ㄹ	강의,교수연구동	강의,교수연구동	산159-11일원	4,662.0	-	4,662.0	
	소 계					20,352	-	20,352
기타		쓰레기소각장	쓰레기소각장		26.00	-	26.00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3,500.00	-	3,500.00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300톤/일	-	300톤/일	
		체육장	체육장		3,100	-	3,100	

2.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경북과학대학	세부시설중 강의, 교수연구동(A)의 건축연면적 증가 A=5,666.4→6,935.4㎡(증1,269㎡)	사회체육계열 체육실습을 위한 실내공간의 확보

공 고

경주시 공고 제2004-1024호

공 인 신 조 공 고

경주시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한 공인을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경 주 시 장

1. 신조 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인 영	사용개시일	비 고
수입증지요금계기전용 탑정동장의인 민원사무용		2004. 12. 6. 09 : 00	

안동시 공고 제2004-438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공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6일

안 동 시 장

1. 인가신청의 요지 : 2005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기존 경기장을 증축 및 개. 보수 함으로서 대회 개최비용 절감 및 시설의 최적화와 성공적 대회 개최의 기여는 물론 시민체육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유치 시 민문화 체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사업 시행지 : 안동시 정하동 417번지의 8필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 나. 명 칭 : 운동장증축 및 개·보수
4.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부지 결정면적 : 223,670㎡(시행면적 42,338㎡)
 - 나. 규 모
 - 건 축
운동장 건축연면적 : 당초 3,128.82㎡ → 변경 9,112.80㎡(증 5,983.98㎡)
 - 기반시설 : 1식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번지
- 나. 성 명 : 안 동 시 장
- 6.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05. 12. 31
- 7. 관계도서 및 기타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함)
- 8. 공람장소 : 안동시청 도시과
- 9.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국·공휴일 제외)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관리명세서		비고
	동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정하	351	체육용지	2,473	1,977	안동시 명륜동 344번지	안동시			
3	정하	406	체육용지	13,035	8,74	안동시 명륜동 344번지	안동시			
3	정하	417	체육용지	15,457	15,457	안동시 명륜동 344번지	안동시			
4	정하	421	체육용지	4,192	4,192	안동시 명륜동 344번지	안동시			
5	정하	425	체육용지	9,878	2,317	안동시 명륜동 344번지	안동시			
6	정하	433	체육용지	8,103	3,841	안동시 명륜동 344번지	안동시			
7	정하	645-1	하천	25,319	4,793	국	건교부			
8	정하	655	도로	889	593	국	건교부			
9	정하	657	도로	1,293	427	국	건교부			
계				80,639	42,338					

영주시 공고 제2004-489호

영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안) 공람·공고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하망동 공설시장 주변지역에 공영주차장(노외)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하오니, 본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영주시청 도시개발과(☎054-639-634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6일

영 주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도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관계도서 비치) : 영주시청 도시개발과 및 경제교통과
3. 도시계획사업 내용
 - 가. 사업시행지 :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548-13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 칭 : 공영주차장(노외) 조성사업

다. 사업규모

(단위 : m²)

구분	시 설 결정면적	시 행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세부시설 내용
신설	1,641.9	1,641.9	1,468.69	4,282.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 수 : 지상3층, 옥상층 • 주차면수 : 183면 (1층39,2층45,3층45,옥상54) • 부대시설 : 화장실 등
목적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하망동 공설시장 주변에 공영(노외)주차장을 건립하여 교통혼잡 완화 및 시민들에게 주차편의 제공				

라.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05. 6. 30까지

마. 사업시행자 : 영주시장(영주시 휴천동 47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영주시 하망동	548-13	대	130.7	130.7	영주시	
2	"	548-18	대	545.1	545.1	"	
3	"	548-19	대	831.8	831.8	"	
4	"	548-22	대	83.9	83.9	"	
5	"	548-23	대	50.4	50.4	"	
계				1,641.9	1,641.9		

기 타

고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565호

고 시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점용 실시계획
공사시행자 성명 및 주소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294번지 성 명 : 철도청 대구시설관리사무소장
공사 목적 및 사유	철도교각 보수. 보강
공사 위치	영천시 금노동 683번지 지선
공사 기간	인가일로부터 2004. 12. 30까지
수용 또는 사용 하고자 하는 토지의 목록	

공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4-311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 2. 노 선 명 : 국도25호선(대구-상주)
-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길수교차로 Ramp연장=0.52km, 마을진입도로 연장=0.36km)
- 4. 중요 경과지 : -
- 5. 전 용 구 간 :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길수교차로 Ramp연장=0.52km, 마을진입도로 연장=0.36km)
- 6. 종 용 구 간 : 없음
- 7. 개 시 일 시 : 2004. 11. 30. 12:00부터
- 8. 비 고 : 상림-해평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의 일부구간을 우선 사용 개시
하여 지역교통의 안전 및 원활을 도모코자함.

※ 첨부서류 : 노선도(지형도 1/50,000)

요통예방과 치료를 위한 생활요령 10가지

1. 신발외에는 가급적 딱딱한 의자나 침대를 쓴다.
2. 수면자세는 옆으로 누운 태아 모양이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는데 좋다.
3. 바른 들기 자세로 허리를 보호하자. 물건을 들 때는 물체를 되도록 몸에 밀착시키고,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무릎을 굽혀 든다.
4. 물건을 나를 때는 짐을 양손에 나눠 들어야 신체가 균형이 잡혀 척추가 보호된다.
5. 앉은 자세는 등보다 허리가 등받침에 밀착되도록 해야 척추가 곧게 펴진다. 무릎은 의자와 직각이 되게 하고, 다리를 꼬는 자세는 허리에 부담을 주므로 피한다.
6. 오래 앉아 일하는 사람은 가끔 허리를 뒤로 젖히고 나서 약간 걷는다.
7. 허리가 많이 아플 때는 발을 벽돌이나 못쓰는 두꺼운 책 위에 올려 놓으면 편해진다.
8. 담배는 뼈 속의 무기질을 감소시켜 허리뼈의 미세 골절을 일으키거나, 디스크로 가는 영양분을 감소시키므로 꼭 피할 것
9. 허리에 가장 위험한 자세에 유의하자. 걸상에 앉아서 바닥 옆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때 무심코 취하는 자세
10. 잠깐 눈을 붙일 때는 책상에 엮드려 자지 말자.

성인병 예방의 길

성인병을 예방하는 길은 건전한 생활습관을 갖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지하며, 자기에게 알맞은 운동을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건전한 생활 습관을 기질 것

-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 욕심을 버리고 덕을 쌓는다.
- 절제 있는 생활을 한다. (담배, 술)

2. 식생활을 개선할 것

- 여러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는다.
- 정상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게 먹는다.
- 음식을 되도록 싱겁게 섭취한다.
- 과음을 삼간다.
- 식사는 규칙적으로 즐겁게 한다.

3. 운동을 생활화할 것

- 약간의 피로가 올 정도로 운동을 한다.
- 반드시 운동의 기본기량을 익혀 실시한다.
- 단계적으로 운동량을 증가한다.
-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잊지 않는다.
- 정기적인 신체검사와 운동처방에 의한 운동을 한다.
- 운동의 목적 설정을 분명하게 한다.